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대규모 행사의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미확보 시  
과태료 신설 등〉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8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대규모 행사의 응급의료인력·이송수단 미확보 시 과태료 신설 등<br>(안 제54조의3, 안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 3 |



## I. 개요

### 1.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784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31.
- (3) 회 부 일 : 2026. 1. 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대규모 행사의 응급의료인력·이송수단 미확보 시 과태료 신설 등(안 제54조의3, 안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규모 행사 개최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안 제54조의3), 미확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u> 한다. |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br>-----<br>-----<br>-----<br>-----<br>-----<br>---- <u>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u> -----. |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2조(과태료) ① -----<br>-----<br>-----.                                                                                                                               |

|                                   |                                                                           |
|-----------------------------------|---------------------------------------------------------------------------|
| 1. ~ 5. (생략)<br><u>&lt;신설&gt;</u> | 1. ~ 5. (현행과 같음)<br><u>5의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u> |
| 6. · 7. (생략)<br>② · ③ (생략)        | 6. · 7. (현행과 같음)<br>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법령은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확보 대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 및 ‘확보해야 하는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행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예상되는 행사임 (시행령 제27조의3<sup>1)</sup>).

※ 「공연법」 제11조제2항<sup>2)</sup>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

-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은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및 구급차등 1대임(시행규칙 제44조의2<sup>3)</sup>).

1)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2)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 응급이송수단: 구급차등 1대

□ 그런데 현행 법령은 행사 규모와 같은 행사의 특성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의 수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 행사 규모·성격·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여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음.

- 다만, 현행법은 행사 개최자가 확보해야 하는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제54조의3을 유지하되 시행규칙에서 행사 특성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에 적절한 차이를 두도록 규정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과태료와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은 행사 개최자가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을 미확보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타법의 예를 살펴보면,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공연법」 제11조제1항4)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5)).

---

4)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5) 「공연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과태료 신설의 경우,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여 수용

다만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확보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안 제54조의3의 경우,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해석상 혼란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행 조항 유지 의견

- 또한, 종교·문화·체육·집회 등 행사 유형별로 그 성격 및 위험도가 광범위하므로, 시행규칙에서 행사에 따른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구체화하거나 지표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